

- 2024년 3월 중 -

불법어업 지도·단속 사전예고 안내문

추진목표

- ◆ '선(先) 지도, 후(後) 단속'을 통해 어업인 자율에 의한 준법조업 분위기 조성 및 불법어업 예방, 투명·공정한 행정 구현

1 육·해상 지도·점검 계획

□ 살오징어 금어기 도래 전 현장 홍보 및 지도·점검 활동 강화

- 어린 오징어 생산·유통·보관 근절 육·해상 특별점검
 - 합동 단속반 편성 및 살오징어 위판장을 중심으로 어린 오징어 포획, 혼획율* 및 TAC 배분량 초과 점검, 사매매 행위
 - 어업인, 수협 등 어업인 단체를 대상으로 금어기·금지체장 홍보
- * 금지체장/금어기 : 외투장 15cm 이하(혼획 20%허용) / 4.1~5.31.(채낚기,연안복합,정치망 4월만)
- ** 위반 : 「수산자원관리법」 제14조에 따라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

□ 업종별 주요 불법어업 점검·단속

- (근해자망) 오징어 포획금지 구역* 및 TAC 초과 어획, 미(거짓)보고, 지정위판장이 아닌 타 어선 이적 또는 사매매 등 행위
 - * 동경 128도 30분 以東해역(경남·부산·울산·경북허가 어선은 129도 以東해역)
- (새우조망) 허가외 어업(소형기선저인망) 및 허가구역 외 조업
- (대형트롤) 출항 후 위치발신장치(AIS, VHF-DSC 등) 미작동
- (동해구트롤) 낭만부(끝자루) 2중 이상 어망사용 및 조업금지구역 위반
- (쌍끌이저인망) 조업구역 및 삼치 TAC 초과 어획·미(거짓)보고 행위

□ 조업 및 어구사용 금지구역 위반행위 지도·단속

- 관할해역 근해업종(동해구외끝이중형저인망, 서남해구외끝이·쌍끝이중형저인망, 동해구중형트롤 등)의 조업구역* 및 조업금지구역** 위반감시

* 조업구역 : 경상북도와 울산광역시의 경계와 해안선의 교점에서 방위각 107도의 연장선을 기준으로 동해구-서남해구 저인망 조업구역 분리(수산업법 시행령 제31조제1항 관련 [별표 5]) [사법]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/ [행정] 어업정지(60일, 90일, 취소)

** 조업금지구역 : 「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」 제7조제1항 및 [별도1] [사법처분] 1천만원 이하의 벌금, [어업정지] 1차 60일, 2차 90일, 3차 취소

□ 동해안 대게 불법어업 지도·단속

- 암컷, 체장미달 대게 포획·유통·판매, 암컷대게 통발미끼 사용 및 '대게·붉은대게류 통발사용금지구역(주11해역)' 위반 등

< 중점 단속대상 >

- ◆ 암컷 및 체장미달(9cm이하) 등 불법대게 포획·유통·판매 행위
- ◆ 통발어업 대게 포획금지, 대게류·붉은대게류 통발 사용금지구역 위반
- 경북(경주~울진) 수심 420m 경계선 내 대게포획금지(연중, 주11해역)
- ◆ 그물코 금지 규격(통발 150mm이하, 자망 240mm이하) 위반
- ◆ 대게 TAC 초과어획, 어획량 미보고·거짓보고, 사매매 행위 등

□ 접경수역 출어선 안전관리 및 외국EEZ 침범조업 관리 강화

- 외국EEZ* 경계선 근접조업 어선(서남구저인망·채낚기·자망 등)에 대한 지도·홍보를 강화하고, EEZ침범 조업 위험이 있을 시 사전차단

* 대화퇴, 한·일 중간수역 및 동해남부~남해EEZ 등

- GPS 플로터 등 항해장비의 세계측지계(WGS-84) 사용

* ① '동경측지계'와 '세계측지계'의 혼용 사용으로 인한 항행 위험 주의, ② 동경측지계로 사용한 어장위치(좌표)를 세계측지계로 사용시 반드시 좌표 변환

일본 측, 우리어선 무허가 침범조업 나포·단속 강화

기간 : '23년 11월 ~ '24년 5월

□ 연근해 자망·통발 어구실명제 지도·단속

- 연·근해 자망·통발 어구실명제 미이행 지도·단속

(예시)

어구 소유자의 성명(연락처) : ○○○(000-0000-0000)

허가어선의 명칭(어선번호) : ○○○호(어선번호)

사용어구의 일련번호 : 10-1[사용어구의 총 개수(통수, 틀수 등)-해당 어구의 일련번호]

* 「수산업법」 제76조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어업정지(1차 30일 2차 60일 3차 90일)

□ 수산관계 법령 홍보

- (금지체장) 문치가자미, 참가자미, 용가자미, 기름가자미 금지체장 (20cm) 적용('24.1.1.) 홍보('24.6.30.)
- (어구생산·판매) 신고제도 계도기간('23.1.12.~'24.1.11.) 종료에 따라 미신고 업체는 '24년 1월 11일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(시·군·구)에 신고
- (금지구역) 강원연안 근해통발 조업금지 기간 추가 및 조업(금지) 구역 표기방식 경위도 좌표 개선
 - [별표 7] 사. 근해통발어업 “계” 포획 목적 통발사용 금지기간 / 주10)의 해역 : (개정) 5.1~7.31일까지, 10.31~12.31일까지. 다만, 대계의 경우 연중
 - [별표 7] 주1)부터 주6), 주8), 주9) 및 주12)부터 주14)까지 경위도 좌표로 개선
- (수산자원) 누구든지 수산자원의 이식(移植)에 관한 제한·금지 또는 승인 명령을 위반하거나 승인 명령을 받지 아니하고 수산자원을 소지·보관 또는 판매할 수 없도록 규정
 - * [사법처분] 2천만원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

※ 수산관계법령 법, 시행령, 규칙, 개정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(www.law.go.kr)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2 어선법

□ 장거리 위치발신장치(D-MF/HF) 설치 및 상시작동 지도·단속

- (상시작동) 해상디지털 통신장비 설치사업 의무설치기한이 만료된 업종*을 대상으로 D-MF/HF 미설치·미작동** 행위 중점 지도·단속
 - 장비를 고의로 미작동하거나, 어선 상시전원이 아닌 배터리모드로 동작하는 등 위치가 정상적으로 수신되지 않는 어선 집중점검
- * (설치대상) 기선권현망·잠수기 어업을 제외한 모든 근해업종
- ** (미설치) 어선법 제21조에 따라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(미작동) 어선법 제5조의2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
- (고장신고) 어선위치발신장치 고장사실 미신고, 고장신고 이후 수리 등의 조치 미이행 시 어선법 제5조의2 의거 과태료 부과
 - * 어선위치발신장치 고장·분실 시 지체없이 관할 해경파출소(해상-어선안전조업국 또는 경비함정)에 신고 후 15일 이내에 수리 등의 조치 필요

3 어선안전조업법

□ 주요 내용

- 「어선안전조업법」에 따른 출입항 신고 이행 철저
 - * 법 제8조 및 시행규칙 제2조 : 특정해역, 조업자제해역에 출어하는 어선은 어선출입항 신고(확인)서를 신고기관에 제출하여 확인을 받은 후 어선에 갖춰 두어야 함
- 「어선안전조업법」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특정해역 또는 조업자제해역에서 조업하려는 어선은 신고기관에 출어등록
- 기상특보(태풍·풍랑·폭풍) 및 기상예비특보 발효 시 어업지도선, 해경함정의 이동 및 대피명령 준수, 구명조끼 의무 착용
- 특보 발효 시 사고 예방 및 신속한 구조를 위해 어선의 위치보고 준수
 - * 1일 1~3회 위치보고+풍랑특보(12시간 마다), 태풍특보(4시간 마다)시 추가 위치 보고

□ 지도점검 계획 : 3월 중

- 지역/대상 : 경북 / 관리기관, 선박 등 공급대상 사용자
- 주요 점검사항 : (내수면) 관리기관 공급중지 기간 중 부적정 공급 여부, 사용자 내수면어선 존재 여부, (기타) 구비서류 관리현황 등

< 기타 면세유 사용금지 철저 요청 >

- '15. 7. 1.부터 과징금 납부해도 해당 불법어업 어업정지 처분에 상응하는 기간
* 「농·축산·임·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」 제20조 제8항
- 양식장 관리선 소유한 어업인이 본인 양식장 관리를 위해 공급받은 면세유를 타 양식장의 어장관리를 목적으로 어선 이용(승인) 시 사용불가('용도 외 사용' 해당)

□ 관리기관·어업인·석유판매업자별 주요 점검사항

점검대상	점검내용	제재사항
관리기관	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면세유류 카드 등 발급	가산세* 징수 * 감면세액의 100분의 40
	② 관련 증거서류를 확인하지 아니하는 등 관리부실로 인하여 면세유류카드등을 잘못 발급하거나 어민 외의 자에게 발급	가산세* 징수 * 감면세액의 100분의 20
어업인	① 어업기계 또는 선박 및 시설의 보유 현황과 어업경영 사실 신고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하거나, 어업기계 또는 선박 및 시설의 취득·양도 또는 사망·이어(離漁)등으로 신고 내용에 변동 사항 발생 시 그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 변동내용 미신고	2년간 면세유 사용 불가
	② 면세유류 구입카드 또는 출고지시서와 그 카드 또는 출고지시서로 공급받은 석유류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	2년간 면세유 사용 불가
	③ 어업기계 및 선박의 사용실적, 어업기계 및 어업용 시설의 생산실적을 최종 제출기한까지 미제출 또는 거짓으로 제출	1년간 면세유 사용 불가
	④ 어업용 외 용도 사용(자동차, 가정용 보일러, 무허가 어선 및 시설 등)으로 감면세액 및 가산세 추징사유 발생 시 * 상기 4가지의 사유로 면세유 사용 불가 시, 그 어민등과 공동으로 생산 활동을 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으로서 생계를 같이하는 자 포함	2년간 면세유 사용 불가
	⑤ 면세유류 구입카드 또는 출고지시서와 그 카드 또는 출고지시서로 공급받은 석유류를 양수받은 경우 ◆ 그 외, 면세유 사용 불가 기간 안내 ◆ - 어업 등에 대한 제한(취소, 감척 등) 등으로 어업을 수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→ 해당 어업을 수행하지 아니하는 기간 - 「수산업법」 따라 어업 등에 대한 제한이나 정지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을 부과받은 경우 → 과징금(감경하거나 가중하기 전의 금액 기준)에 상응하는 정지처분 기간	감면세액 + 가산세* 추징 * 감면세액의 100분의 40
석유판매업자	① 신청하여야 할 환급·공제세액을 초과 신청	감면세액 추징
	② 부당한 방법으로 환급·공제세액 신청 * 감면세액 추징 사유 발생 시, 관리기관 중앙회는 면세유 판매 지정을 취소 할 수 있으며 지정취소일부터 5년간 면세유 판매불가(조특법 제106조의2 제13항)	감면세액 + 가산세* 추징 * 감면세액의 100분의 40

